

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[별지 제9호의3서식] 세움터(www.eais.go.kr)에서도
<개정 2025. 7. 31.>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건축물현황도 열람·발급 신청서

• 어두운 난()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시	발급일	처리기간	7일
신청인 (개인)	성명	생년월일			
	주소	연락처			
신청인 (법인 또는 단체)	법인·단체명	법인등록·고유번호			
	대표자	연락처			
신청 건축물 주소	대지위치 도로명주소				
신청내용	신청구분	[] 발급 (부) [] 열람			
	건축물현황도	[] 층 평면도 ()층 [] 단위세대평면도 ()호			
용도 및 목적					

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11조제3항제7호에 따라 건축물
현황도의 열람·발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읍·면·동장 귀하

유의사항				
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 에 관한 규칙」 제11조제3항제7 호 관련	「건축법 시행령」 제2조제17호가목의 다중이용 건축물(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층은 제외합 니다)로서 이용자의 안전, 장애인 등의 이용 편의, 그 밖의 공익 목적을 위해서만 건축 물현황도 중 평면도를 열람 또는 발급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는 열람 또는 발급 할 수 없습니다.			
수수료	구분	신청 항목	방문 신청	인터넷 신청
	열람	건축물현황도	1면당 100원	무료
	발급	건축물현황도	1면당 100원	무료